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 개선〉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63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명칭 변경 · 3	
2. 사업자 부담 비용을 지정심사 비용으로 직접 사용 근거 마련 · 10	
※ 참고자료: 인증규제 정비 현황: (유사 인증) 제외 목록(91개) ·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상훈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5. 3. 28.
3. 회 부 일 : 2025. 3.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의 과정을 포함한 경영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에게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인증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인증의 의미는 제품·서비스 등이 국가·국제표준 등 일정한 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증명하는 것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는 명칭은 그 의미·성격에 차이가 있어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2024년 2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인증규제 개선방안에서도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 혼선 유발 유사인증 91개에 포함시킨 바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에게 그 인증 심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실제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한국소비자원)에서 해당 비용을 인증제도 운영에 직접 사용

하고 있으나, 국회정무위원회 결산심사에서는 사업자에게 납부받은
인증 심사 비용을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 심사 업무에 사용하는
것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소비자중심경영인증 명칭을 그 성격에 부합하는 소비자중심
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꾸고, 지정 심사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담하
는 비용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의 심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의2 등).

Ⅲ. 검토의견

1.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명칭 변경

- 개정안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 명칭을 그 성격에 부합하는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변경함(안 제20조의2, 제2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항 신설, 제20조의4).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이라 한다)을 하는 <u>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u> (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① ----- ----- ----- ----- ----- <u>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할</u> -----.
② <u>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u>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u> ----- -----.
③ <u>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는</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u>인증의</u>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u>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 받은 자는</u> ----- ----- <u>지정의</u> ----- -----.
④ <u>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u>	④ <u>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u> ----- ----- <u>지정을</u> -----

현행	개정안
으로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u>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u>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의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u>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u>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0조의3(<u>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등</u>)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 관한 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u>	-----. ⑤ ----- ----- -----<u>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에</u>----- -----. ⑥ -----<u>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u>에----- -----<u>지정의</u>----- -----. ⑦ ----- -----<u>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u>----- -----. 제20조의3(<u>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 등</u>) ① ----- ----- ----- ----- <u>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이하 “지정심사기관”이라 한다)</u>-----<u>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심사에 관한 업무(이하 “지정심사업무”라 한다)</u>---

현행	개정안
② <u>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u>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u>인증기관</u>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인증기관의 지정</u>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u>인증업무를 행한 경우</u>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7항에 따른 <u>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u> 4. 정당한 사유 없이 <u>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u> 5. (생략) 6. 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u>인증업무를 수행하기</u>	-----. ② <u>지정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지정심사기관의</u>----- ----- -----. ③ -----<u>지정심사기관이</u>----- -----<u>지정심사기관의</u>----- -----. 1. (현행과 같음) 2. ----- -----<u>지정심사업무를</u>----- ----- 3. ----- -----<u>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u>----- ----- 4. -----<u>지정심사업무를</u>----- 5. (현행과 같음) 6. ----- -----<u>지정심사업무를</u>-----

현행	개정안
어려운 경우 <신설> 제20조의4(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0조의2제7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후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④ 지정심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정심사기관의 수입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징수한 수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정심사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의4(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취소) ① -----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을-----, ----- 지정을-----. 1. -----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2. -----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3.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현행	개정안
로부터 시정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u>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에</u> 대하여 그 <u>인증이</u>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u>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u>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 <u>소비자중심</u> <u>경영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자에</u> - ----- <u>지정이</u> ----- ----- ----- <u>소비</u> <u>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u> 을----- -----.

□ 현행법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고, 해당 인증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

1)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이라 한다)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의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게 하는 등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을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지정²⁾함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평가신청을 한국소비자원에 하고, 이 평가에서 기준점수³⁾ 이상을 획득할 경우 공정위가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2024년 12월 기준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은 236개임.

<소비자중심경영인증 기업 현황>

(단위: 개)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신규 인증기업 수	16	33	19	19	29
총 인증기업 수	185	211	219	225	236

자료: 한국소비자원

- ☐ 그러나 인증의 의미는 제품·서비스 등이 국가·국제표준 등 일정한 기술수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공

2)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3(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 관한 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6(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소비자원

2. (생략)

② ~ ③ (생략)

3) 1,000점 만점에 800점

식적으로 확인·증명하는 것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는 명칭은 그 의미·성격에 차이가 있어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2024년 2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인증규제 개선방안에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 혼선 유발 유사인증 91개⁴⁾에 포함시키고, 이러한 소비자 혼선을 유발하는 유사인증은 인증에서 제외하고 소관 부처의 타 행정행위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⁵⁾.

□ 이에 따라 개정안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소비자 혼선 유발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혼선을 유발하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며, 수용한다는 의견임.

4) < 참고자료 > 인증규제 정비 현황: (유사 인증) 제외 목록 (91개)

5)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2024. 2. 27.(화) 10:30) 3p.

2. 사업자 부담 비용을 지정심사 비용으로 직접 사용 근거 마련

개정안은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한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의 심사 비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20조의3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 의 지정 등) ① ~ ③ (생략) <신설>	제20조의3(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 등) ① ~ ③ (생략) ④ 지정심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 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정심사기관의 수입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징수 한 수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 인을 받아 지정심사업무에 필요 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현행법 제20조의2제6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인증의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⁶⁾.

6)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① ~ ⑤ (생략)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의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생략)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5(인증심사비용) ① 법 제20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심사비용은 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3⁷⁾ 등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수탁받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⁸⁾,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⁹⁾은 모두 한국소비자원으로 귀속되고 있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 관련 수입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수입 예산	수입 결산	집행액	잔액
2020년	400,000	348,850	348,601	249
2021년	400,000	420,950	420,480	470
2022년	400,000	375,800	375,557	243
2023년	400,000	474,450	474,316	134
2024년	400,000	429,750	429,423	327

자료: 한국소비자원

7)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3(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 관한 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6(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소비자원

2. (생략)

② ~ ③ (생략)

8) 현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신청 기업에 대한 평가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수입은 인증기업 평가수입 및 교육수입으로 구성됨.

9)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9조(인증심사비용) ① 제8조에 따라 심사를 신청한 기업등은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11조의5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비용을 인증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②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심사비용 (제9조 관련)

1. 인증심사비용(부가세 별도) 신규평가 6,000,000원, 재평가 4,000,000원

2.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증심사비용(부가세 별도) 신규평가 200,000원, 재평가 150,000원

□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청 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인증 비용을 한국소비자원의 인증제도 운영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재정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총계주의¹⁰⁾ 및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른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원칙¹¹⁾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¹²⁾.

□ 이에 개정안은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한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의 심사 비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직접 경비 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며 수용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15

10) 「국가재정법」 제17조는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는 예산총계주의를 규정하고 있음.

11)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12)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 53p.

【참고자료】 인증규제 정비 현황: (유사 인증) 제외 목록(91개)

NO	소관 부처	명칭	구분	NO	소관 부처	명칭	구분
1	고용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의무	47	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임의
2	고용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임의	48	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의무
3	고용부	사회적기업	임의	49	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임의
4	고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의무	50	복지부	혁신형의료기기군 지정	임의
5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임의	51	복지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임의
6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CCM)	임의	52	복지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임의
7	교육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임의	53	산림청	목재제품신기술지정	임의
8	교육부 (고용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임의	54	산림청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의무
9	국토부	건축설비 신기술 인정	임의	55	산림청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임의
10	국토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의무	56	산림청	석재산업 우수사업자 인증	임의
11	국토부	교통신기술 지정제도	임의	57	산림청	전통 석재제품 인증	임의
12	국토부	바닥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	의무	58	산업부	녹색인증	임의
13	국토부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의무	59	산업부	신기술인증(NET마크)	임의
14	국토부	소화물배출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	임의	60	산업부	신제품인증(NEP마크)	임의
15	국토부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임의	61	소방청	탱크안전성능검사	의무
16	국토부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임의	62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기준 규격 인정	의무
17	국토부	건축신기술 지정제도	임의	63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의무
18	국토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임의	64	식약처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	임의
19	국토부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임의	65	여가부	가족친화인증제도	임의
20	국토부	우수물류기업 인증	임의	66	중기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확인	임의
21	국토부	우수물류 신기술	임의	67	중기부	벤처기업 확인	임의
22	국토부	장수명주택 인증	의무	68	중기부	성능인증	임의
23	국토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	임의	69	특허청	지식재산 경영인증	임의
24	국토부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임의	70	해수부	갯벌생태관광 인증	임의
25	기상청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	임의	71	해수부	관상어양식 우수사업자 인증	임의
26	기상청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 감정	의무	72	해수부	수산물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인증	임의
27	농식품부	가공식품 및 음식점 원산지인증	임의	73	해수부	수산물 지리적표시	임의
28	농식품부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	임의	74	해수부	수산물품명인	임의
29	농식품부	농산물의 지리적표시제도	임의	75	해수부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임의
30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	임의	76	해수부	우수천일염 인증	임의
31	농식품부	식품명인	임의	77	해수부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	임의
32	농식품부	신기술농업기계지정	임의	78	해수부	해양수산신기술	임의
33	농식품부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임의	79	해수부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	임의
34	문체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임의	80	행안부	기업재난관리자 인증	임의
35	문체부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인증	임의	81	행안부	방재전문인력 인증	임의
36	문체부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	임의	82	행안부	재난안전 신기술 지정제도	임의

NO	소관 부처	명칭	구분	NO	소관 부처	명칭	구분
37	문체부	우수문화상품 지정	임의	83	행안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임의
38	문화재청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임의	84	환경부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	임의
39	문화재청	전승공예품 인증	임의	85	환경부	소음도 검사	의무
40	보훈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	임의	86	환경부	신기술인증기술검증(NET마크)	임의
41	복지부	건강친화기업 인증	임의	87	환경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	임의
42	복지부	고령친화 우수제품	임의	88	환경부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대기오염등급	의무
43	복지부	신기술인증(NET마크)	임의	89	환경부	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의무
44	복지부	어린이집평가인증	의무	90	환경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임의
45	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인증	임의	91	환경부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임의
46	복지부	유전자검사기관의 평가 및 인증	의무				

자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2024. 2. 27.(화) 10:30)